

『구미시 케이엔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신성장동력 사업분야(국방, 탄소, 의료기기 등)의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펀드사에 출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·육성
- 이에 투자조합 출자를 위해 2016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구미시 케이엔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」 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출자개요
 - 대상기관
 - 기 관 명 : (주)케이엔투자파트너스
 - 대표이사 : 김철우

-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3 예동빌딩 9층
- 설립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
- 출자예정액 : 금600,000천원 (1차년도)
- 출자근거
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
 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0조

○ 사업개요

- 조 합 명 :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
 - 한국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(지방기업) 선정 조합
 - 결성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0조

* 한국모태펀드 : '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%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 벤처투자(주)가 운용(조성규모 2조7천억원)

- 운 용 사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
◦ 출 자 자

- 업무집행조합원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- 유한책임조합원 : 경상북도, 구미시, 구미대학교, 기타
- 특 별 조 합 원 : 한국모태펀드

- 조합결성액 : 100억원

- 연도별투자계획

(단위:억원)

구 분	계	2016년	2017년	2018년
계	100	31	42	27
국비(모태펀드)	50	15	20	15
경 북 도	10	4	6	-
구 미 시	20	6	8	6
구미대학교	5	1.5	2	1.5
자 부 담	5	1.5	2	1.5
기 타	10	3	4	3

- 존속기간 : 8년(투자4년, 회수4년) *출자금 납부 : 3년
- 투자대상 : 신성장동력사업분야(국방, 탄소, 의료기기 등) 중소·벤처기업
- 운영방법 : 투자상담회 개최(연2회) 및 지원협의체 운영(월1회)
- 기대효과
 - 지역경제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, 일자리창출,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 20조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, 「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 20조
- 예산조치 : 2016년 2회 추경예산편성(6억원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
 - 중국발 금한 정책 실시와 트럼프 쇼크,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연속된 글로벌 악재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여
 - 기계, 자동차, 디스플레이, 모바일 등의 기존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펀드사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